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14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 김원이 · 김교흥 · 오세희

추미애 • 박홍배 • 남인순

이정문 · 김승원 · 서삼석

양문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첨단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음.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지난해 적발된 23건 중 반도체 분야가 15건을 차지해 국내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세계 주요국은 이미 첨단기술을 국가경제 및 안보 문제로 중요하게 인식하여 자국 기업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억제책과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 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2.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아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특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특 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 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 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 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 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 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 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 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 행위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